

담양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

「담양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11. 13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사회·경제·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,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함으로써,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담양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나.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
- 지원사업의 발굴 및 추진계획
-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
-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다.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라.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5. 11. 13. ~ 11. 18.(5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5년 11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은둔형 외톨이”란 사회·경제·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,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이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담양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담양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
2.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의 발굴 및 추진계획
3.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
4.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 계획을 효율적으

로 수립 및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 대상) 지원 대상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.

제7조(지원사업 등)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상담
2.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
3.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
4.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·예술·체육활동 지원
5.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조성 지원
6.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
7.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

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